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경기도공고 제2019-178호(2019. 1. 24.)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제4항에 따라 경기도(소속 행정기관 및 시·군 포함)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일반용역"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른 용역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총칭한다.

②"단순노무용역"이란 원가계산서에「통계법」제17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 중 단순노무종사원 노임단가를 인건비 기준단가로 적용하는 일반용역 및 이에 준하는 일반용역을 말한다. 다만, 제3항내지 제5항에 의한 용역은 제외한다.

③"정보통신용역"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동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역무 기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수단을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하며 관련 정보통신장비 및 S/W의 유지보수용역(이하 "유지보수용역" 이라 한다)과 소프트웨어사업으로 구분하며,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소프트웨어개발, 시스템 운용환경 설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료입력 및 정보전략계획 수립을 말하며, 관련 정보통신장비 및 S/W의 설치업무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전자·통신·정보처리분야(자료처리업무 포함)의 전문 기술 인력이 필요한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④"폐기물처리용역"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카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단, 건설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은 제외한다.

⑤ "육상운송용역"이란 육상운송장비(궤도차량 및 고정식 장비 제외)를 이용하여 인

원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운전자가 딸린 육상운송장비의 임대활동을 포함)으로서 운송, 배송, 여행, 연수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⑥ “기타 일반용역”이란 제3항 내지 제5항에 의한 용역을 제외한 일반용역을 말한다.

제3조(평가기준) ①적격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해당용역 수행능력(이행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및 지역참여) 평점은 심사항목별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1. 단순노무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별표 1-1
2. 정보통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별표 1-2
3.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별표 1-3
4.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별표 1-4
5. 기타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별표 1-5

②평가에 따른 심사기준일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일 현재로 한다.

제4조(적격심사대상에서의 배제) ①적격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공동수급체의 경우로서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부도·파산상태에 있음에도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부도·파산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입찰공고일 이후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까지 부도·파산상태에서 벗어나 화의결정 후 당좌거래 재개되어도 보증서 발급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는 적격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제5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①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 필요시 제출
4. 신용평가등급확인서
5.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제6조(평가방법) ①이행실적은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하되, 세부내용은 [별표2]에 따른다.

1.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적격심사 시 적용할 이행실적 평가기준(해당용역 인정범위, 기준금액, 규모 등)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하며, 별도 명시가 없다면 기준금액은 해당용역의 추정가격으로 하고 인정범위는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실적으로 한다.
2. 이행실적 평가는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로서 입찰공고문에 명시한 바에 따라 이행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②경영상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하되, 세부내용은 [별표2]에 따른다.
1.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③신인도 및 지역참여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하되, 세부내용은 [별표2]에 따른다.
1. 지역업체 참여도는 공동수급을 허용한 입찰에 한하여 적용하며 지역제한을 하거나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배점한도(3점)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 지역업체 참여도가 불필요한 경우 등 기타의 경우는 입찰공고문에 별도 명시한 바에 따른다.

제7조(공동수급체에 대한 평가) ①경영상태 신용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평가 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②이행실적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이행실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분담이행일 경우는 각각의 이행실적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③신인도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신인도의 감점대상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해당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제8조(낙찰자 결정) ①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은 90점 이상, 10억원 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9조(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①적격심사 시 '해당용역 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을 말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취한다.

제10조(기타사항)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계약예규 등을 준용하며,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평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입찰공고문 등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기준의 시행일은 2019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일반용역의 적격심사부터 적용한다.

2. (다른 기준의 폐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공고 제2018-1825호, 2018.6.8.)은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별표 1-1>

단순노무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항목	배점한도(점, 추정가격 기준)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계			100	100	100	100
해당 용역 수행 능력	이행실적	- 최근 3년간 용역이행실적	37	27	12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30	20	15	10
	지역참여	- 지역업체 참여도	3	3	3	-
	신인도	- 신인도 평가기준	+6.5 ~△5.0	+6.5 ~△5.0	+6.5 ~△5.0	+8.5 ~△5.0
입찰가격		- 아래 산식에 따라 산출	30	50	70	90

2. 입찰가격 평점 산식

구 분	입찰가격 평점산식	산식 예외 적용	낙찰하한율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평점 = 30 - 20 \times \left\| \left(\frac{88}{100} - \frac{입찰가격}{예정가격}\right) \times 100 \right\|$	- 투찰률이 88.25% 이상인 경우 평점은 25점으로 함	87.74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평점 = 50 - 20 \times \left\| \left(\frac{88}{100} - \frac{입찰가격}{예정가격}\right) \times 100 \right\|$	- 투찰률이 88.25% 이상인 경우 평점은 45점으로 함	87.745%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평점 = 70 - 20 \times \left\| \left(\frac{88}{100} - \frac{입찰가격}{예정가격}\right) \times 100 \right\|$	- 투찰률이 88.25% 이상인 경우 평점은 65점으로 함	87.745%
추정가격 2억원 미만	$평점 = 90 - 20 \times \left\| \left(\frac{88}{100} - \frac{입찰가격}{예정가격}\right) \times 100 \right\|$	- 투찰률이 88.25% 이상인 경우 평점은 85점으로 함	87.745%

* | | 는 절대값 표시이고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별표 1-2>

정보통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항목	배점한도(점, 추정가격 기준)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계			100	100	100	100
해당 용역 수행 능력	이행실적	- 최근 3년간 용역이행실적	37	27	27	10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30	20	20	10
	지역참여	- 지역업체 참여도	3	3	3	-
	신인도	- 신인도 평가기준	+4.5 ~△5.0	+4.5 ~△5.0	+4.5 ~△5.0	+6.5 ~△5.0
입찰가격		- 아래 산식에 따라 산출	30	50	50	80

2. 입찰가격 평점 산식

구 분	입찰가격 평점산식	산식 예외 적용	낙찰하한율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평점 = 30 - \left\|(\frac{88}{100} - \frac{입찰가격}{예정가격}) \times 100\right\|$	- 투찰률이 98% 이상인 경우 평점은 20점으로 함	77.99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평점 = 50 - 2 \times \left\|(\frac{88}{100} - \frac{입찰가격}{예정가격}) \times 100\right\|$	- 투찰률이 90.5% 이상인 경우 평점은 45점으로 함	85.495%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평점 = 50 - 4 \times \left\|(\frac{88}{100} - \frac{입찰가격}{예정가격}) \times 100\right\|$	- 투찰률이 89.25% 이상인 경우 평점은 45점으로 함	86.745%
추정가격 2억원 미만	$평점 = 80 - 20 \times \left\|(\frac{88}{100} - \frac{입찰가격}{예정가격}) \times 100\right\|$	- 투찰률이 88.25% 이상인 경우 평점은 75점으로 함	87.745%

* | | 는 절대값 표시이고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별표 1-3>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항목	배점한도(점, 추정가격 기준)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계			100	100	100	100
해당 용역 수행 능력	이행실적	- 최근 3년간 용역이행실적	40	30	20	15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30	20	20	15
	신인도	- 신인도 평가기준	+4.5 ~△5.0	+4.5 ~△5.0	+4.5 ~△5.0	+6.5 ~△5.0
입찰가격		- 아래 산식에 따라 산출	30	50	60	70

2. 입찰가격 평점 산식

구 분	입찰가격 평점산식	산식 예외 적용	낙찰하한율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평점 = 30 - \left\|(\frac{88}{100} - \frac{입찰가격}{예정가격}) \times 100\right\|$	- 투찰률이 98% 이상인 경우 평점은 20점으로 함	77.99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평점 = 50 - 2 \times \left\|(\frac{88}{100} - \frac{입찰가격}{예정가격}) \times 100\right\|$	- 투찰률이 90.5% 이상인 경우 평점은 45점으로 함	85.495%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평점 = 60 - 4 \times \left\|(\frac{88}{100} - \frac{입찰가격}{예정가격}) \times 100\right\|$	- 투찰률이 89.25% 이상인 경우 평점은 55점으로 함	86.745%
추정가격 2억원 미만	$평점 = 70 - 20 \times \left\|(\frac{88}{100} - \frac{입찰가격}{예정가격}) \times 100\right\|$	- 투찰률이 88.25% 이상인 경우 평점은 65점으로 함	87.745%

* | | 는 절대값 표시이고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별표 1-4>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항목	배점한도(점, 추정가격 기준)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계			100	100	100	100
해당 용역 수행 능력	이행실적	- 최근 3년간 용역이행실적	37	27	12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30	20	15	10
	지역참여	- 지역업체 참여도	3	3	3	-
	신인도	- 신인도 평가기준	+4.5 ~△5.0	+4.5 ~△5.0	+4.5 ~△5.0	+6.5 ~△5.0
입찰가격		- 아래 산식에 따라 산출	30	50	70	90

2. 입찰가격 평점 산식

구 분	입찰가격 평점산식	산식 예외 적용	낙찰하한율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평점 = 30 - 4 \times \left\| (\frac{88}{100} - \frac{입찰가격}{예정가격}) \times 100 \right\|$	- 투찰률이 90.5% 이상인 경우 평점은 20점으로 함	85.49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평점 = 50 - 4 \times \left\| (\frac{88}{100} - \frac{입찰가격}{예정가격}) \times 100 \right\|$	- 투찰률이 89.25% 이상인 경우 평점은 45점으로 함	86.745%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평점 = 70 - 20 \times \left\| (\frac{88}{100} - \frac{입찰가격}{예정가격}) \times 100 \right\|$	- 투찰률이 88.25% 이상인 경우 평점은 65점으로 함	87.745%
추정가격 2억원 미만	$평점 = 90 - 20 \times \left\| (\frac{88}{100} - \frac{입찰가격}{예정가격}) \times 100 \right\|$	- 투찰률이 88.25% 이상인 경우 평점은 85점으로 함	87.745%

* | | 는 절대값 표시이고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별표 1-5>

기타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항목	배점한도(점, 추정가격 기준)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계			100	100	100	100
해당 용역 수행 능력	이행실적	- 최근 3년간 용역이행실적	37	27	12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30	20	15	10
	지역참여	- 지역업체 참여도	3	3	3	-
	신인도	- 신인도 평가기준	+4.5 ~△5.0	+4.5 ~△5.0	+4.5 ~△5.0	+6.5 ~△5.0
입찰가격		- 아래 산식에 따라 산출	30	50	70	90

2. 입찰가격 평점 산식

구 분	입찰가격 평점산식	산식 예외 적용	낙찰하한율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평점 = 30 - \left\|(\frac{88}{100} - \frac{입찰가격}{예정가격}) \times 100\right\|$	- 투찰률이 98% 이상인 경우 평점은 20점으로 함	77.99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평점 = 50 - 2 \times \left\|(\frac{88}{100} - \frac{입찰가격}{예정가격}) \times 100\right\|$	- 투찰률이 90.5% 이상인 경우 평점은 45점으로 함	85.495%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평점 = 70 - 4 \times \left\|(\frac{88}{100} - \frac{입찰가격}{예정가격}) \times 100\right\|$	- 투찰률이 89.25% 이상인 경우 평점은 65점으로 함	86.745%
추정가격 2억원 미만	$평점 = 90 - 20 \times \left\|(\frac{88}{100} - \frac{입찰가격}{예정가격}) \times 100\right\|$	- 투찰률이 88.25% 이상인 경우 평점은 85점으로 함	87.745%

* | | 는 절대값 표시이고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별표 2>

배점한도 평가 세부기준

1. 이행실적 평가기준

1) 단순노무·육상운송·기타일반용역

심사항목	등 급	평가점수(점, 추정가격 기준)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 해당용역 기준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이행실적	1) 100% 이상	37	27	12
	2) 100% 미만 75% 이상	33	24	11
	3) 75% 미만 50% 이상	29	21	10
	4) 50% 미만 25% 이상	25	18	9
	5) 25% 미만 0% 이상	21	15	8

2) 정보통신용역

심사항목	등 급	평가점수(점, 추정가격 기준)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 해당용역 기준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이행실적	1) 100% 이상	37	27	27	10
	2) 100% 미만 75% 이상	33	24	24	9
	3) 75% 미만 50% 이상	29	21	21	8
	4) 50% 미만 25% 이상	25	18	18	7
	5) 25% 미만 0% 이상	21	15	15	6

3) 폐기물처리용역

심사항목	등 급	평가점수(점, 추정가격 기준)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 해당용역 기준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이행실적	1) 100% 이상	40	30	20	15
	2) 100% 미만 75% 이상	36	27	18	14
	3) 75% 미만 50% 이상	32	25	16	13
	4) 50% 미만 25% 이상	28	23	14	12
	5) 25% 미만 0% 이상	24	21	12	11

가.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 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및 사업양수도의 경우 실적 이행을 위하여 분할 및 사업양수도시에 권리 이외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평가한다.

2. 경영상태 평가기준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1) 단순노무·육상운송·기타일반용역

신 용 평 가 등 급			평가점수(점, 추정가격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AAA, AA+, AA°, AA-, A+, A°, A-, BBB+, BBB°	A1, A2+, A2°, A2-, A3+,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AA+, AA°, AA-, A+, A°, A-, BBB+, BBB°에 준하는 등급	30	20	15	1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5			
BB+,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	29	19.5	14.5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8	19	14	9
B+, B°,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27	18	13	8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4	15	10	6

2) 정보통신용역

신 용 평 가 등 급			평가점수(점, 추정가격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AAA, AA+, AA°, AA-, A+, A°, A-, BBB+, BBB°	A1, A2+, A2°, A2-, A3+,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AA+, AA°, AA-, A+, A°, A-, BBB+, BBB°에 준하는 등급	30	20	20	1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5			
BB+,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	29	19.5	19.5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8	19	19	9
B+, B°,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27	18	18	8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4	15	15	6

3) 폐기물처리용역

신 용 평 가 등 급			평가점수(점, 추정가격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AAA, AA+, AA°, AA-, A+, A°, A-, BBB+, BBB°	A1, A2+, A2°, A2-, A3+,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AA+, AA°, AA-, A+, A°, A-, BBB+, BBB°에 준하는 등급	30	20	20	15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5			
BB+,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	29	19.5	19.5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8	19	19	14
B+, B°,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27	18	18	13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4	15	15	11

가. 신용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신용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Ⅲ. 9.에 등재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평가한다.

3. 신인도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가점수(점)
가. 여성기업지원 및 여성고용촉진	
(1)「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한 경우	+1.0
(2) 여성고용 우수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10% 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 종업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1.25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 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 종업원이 5인 이상인 기업	+0.75
(3)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2.0
나.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 촉진	
(1)「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한 경우	+1.5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	+2.0
-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률이「장애인 고용촉진 직업재활법」제28조에 따른 의무고용률 이상인 기업	+1.0
다. 가족친화 및 일하기 좋은 일터 인증기업 지원	
(1)「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2.0
(2)「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제9조에 따른 일하기 좋은 일터 인증을 받은 기업	+2.0
라. 사회적기업(예비 사회적기업 포함) 육성	
(1)「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사회적기업	+2.0
(2)「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경기도에서 지정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	+2.0
(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2.0
(4) 경기도지사 또는 경기도내 시장·군수로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2.0
(5)「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2.5
(6)「협동조합기본법」제15조에 의한 협동조합 형태의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2.5

마.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1)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	+1.5
바. 공동수급체 구성 - 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한 경우	+0.5
사. 용역근로자 보호조치 준수 이행(단순노무용역에 한함) 1)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 2)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 퇴직금, 4대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 - 포괄적인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1.0 +1.0
아. 생활임금 지급 기업 지원 및 생활임금의 민간확산 촉진 (1) 당해 사업 관련 신규 채용자에 대해 경기도 또는 경기도내 시·군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 - 신규직원 1명당 0.2점 부여(장애인직원 고용시 1명당 0.4점), 최고 2점 - 당해연도 해당 자치단체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인정	+2.0
자. 특별신인도(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에 한함) - 최근 3년간 해당용역 이행실적 합계액이 당해용역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2.0
차. 부정당업자 제재 - 최근 2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	△2.0
카. 최근 3년간 근로(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및 하도급(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관련법 위반한 자 -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 - 행정처분을 받은 자	 △3.0 △2.0

1) 신인도 심사항목별 평가는 각 항목별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합산하여 적용하고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2) “가”, “나”, “다”, “라”의 평가는 주무부·처·청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 경기도지사, 경기도내 시장·군수가 각각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한다(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3) “가-(2)” 여성 고용에 따른 고용률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여성종업원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자료를 제출받아서 평가한다.

4) “나-(2)”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5) “나-(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률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애인 증명은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 고용사실증명은 사업장가입자 명부 등으로 확인)에 기재된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자료를 제출받아서 평가한다.

6) “가”~“라”의 심사항목 내의 각 항목이 중복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7) “마” 정규직 전환 이행여부 확인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된 정규직전환지원금 처리통지서에 의하며, 이행일자는 통지일자로 한다.

8) “바”의 평가는 공동계약방식의 입찰로 입찰공고 한 경우에 평가하되 중소기업 평가는 공동수급체의 대표 이외의 구성원이 중소기업으로서 분담비율을 합산하여 10% 이상인 경우에만 평가한다.(“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우만 평가)

9) “사”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별지 제5호 서식)** 제출자에 한하여 가점 부여하며 시중노임단가 기준은 당해 연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분 보통인부 시중노임단가(보통 인부, 작업반장 등)기준으로 하고 시설물관리용역의 경우에는 해당직종의 시중 노임단가 또는 (사)한국건축물유지관리협회의 당해 연도 건축물유지관리비 표준단가표상의 노임을 적용한다.

10) “아”의 당해 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은 적격심사 시 확약서**(별지 제6호 서식)**를 징구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신규채용 계약서, 고용보험 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해야 하며, 준공 검사 시에 고용보험 증명서 등을 사업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약서 이행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①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고용승계 및 영업양도, 합병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승계는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② 입찰공고일이 포함된 당해연도 해당 자치단체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한다.

(적용 례) 2019년 1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 2019년 경기도 생활임금 시급 10,000원 / 월급 2,090,000원(법정근로시간 월 209시간 적용)이므로 통상임금 기준 월급여 2,090,000원 이상

지급해야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

11) “차”, “카”의 감점 적용은 해당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일 등을 기준으로 하며,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경우는 형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발주기관은 상기 사항을 확인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소송 등으로 형의 효력이 정지되었다가 재개될 경우 동 기간은 기간산정에서 제외한다.

4.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가점수
지역업체 참 여 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	1) 40% 이상 2) 25% 이상 40% 미만 3) 10% 이상 25% 미만	3 2 1

1)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적용

2)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한 경우 또는 지역업체 간 공동으로 입찰한 경우 배점한도(3점) 점수 적용

[별지 제1호]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용 역 명 :

○ 수 요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일반용역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심사대상입찰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식

경기도(분임)재무관 귀하

접 수 증

1. 구매관리번호 :
2. 용 역 명 :
3. 수요기관 :
4. 제 출 자 :

위 건 용역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경기도(분임)재무관 (인)

[별지 제2호]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공고번호	
입찰일시	
용 역 명	
용역기간	
수요기관	
입찰금액	
예정가격	
제출기한	

2. 심사대상입찰자

회 사 명	(전화)
대 표 자	
업종구분	입찰에 참가한 업종을 기재합니다.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이 행 실 적			
경 영 상 태			
신 인 도			
지역참여도			
입 찰 가 격			

[별지 제3호]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table>
<tr><td rowspan="5">신 청 인</td><td>업체명(상호)</td><td colspan="2"></td><td>대 표 자</td><td colspan="2"></td></tr>
<tr><td>영업소재지</td><td colspan="2"></td><td>전 화 번 호</td><td colspan="2"></td></tr>
<tr><td>사업자번호</td><td colspan="2"></td><td>조달청등록번호</td><td colspan="2"></td></tr>
<tr><td>증명서용도</td><td colspan="2">일반용역 적격심사 신청용</td><td>제 출 처</td><td colspan="2"></td></tr>
<tr><td>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4">용역이행
실적내용</td><td>용 역 명</td><td colspan="2"></td><td>구 분</td><td colspan="2">학술( ), 정보통신( )
청소( ), 시설관리( )
경비( ), 폐기물처리( ),
기타분야( ),</td></tr>
<tr><td>용역개요</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3">계 약 내 용</td><td colspan="3">이행실적내용</td><td rowspan="2">비고</td></tr>
<tr><td>계약번호
(계약일자)</td><td>계약기간</td><td>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td><td>이행기간</td><td>이행실적(금액또는면적)
비율</td><td>실적</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4">증 명 서
발급기관</td><td colspan="6">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td></tr>
<tr><td colspan="6">기 관 명 : (인) (전화:)</td></tr>
<tr><td colspan="6">주 소 : (FAX :)</td></tr>
<tr><td colspan="3">발급부서 :</td><td colspan="3">담당자:</td></tr>
<tr><td colspan="7">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 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td></tr>
</table>

[별지 제4호]

각 서

용 역 명 :

당 사는 위 건 적격심사서류(신인도 평가서) 제출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다음 기재사항에 대해 해당사실이 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적격낙찰자대상에서 제외 또는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 또는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다 음

1.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령 및 최저임금법에 의한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사실
2. 최근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
3. 최근 2년간 입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부정행위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경기도(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제5호]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 인건비는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및「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 반드시 법인 인감 날인

경기도(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제6호]

신규 채용자 생활임금 지급 확약서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채용내역**

채용형태	채용인원	월 급여	근로계약기간
신규 직원	1명	209만원	2019. 2. 1.~
		<예 시>	

당사는 (　　)사업 낙찰시 위와 같이 신규직원을 채용하여 본 사업에 투입할 것이며, 경기도 생활임금 확산 정책에 참여하기 위하여 경기도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겠습니다.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고 신규 채용자 생활임금 지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 반드시 법인 인감 날인

현장감독 확인
소속
직급
성명　　(인)

경기도(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제7호]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확인기관)	비고(서식)
총 괄	1	- 적격심사신청서	신청자	별지 제1호
	2	-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신청자	별지 제2호
이행실적	3	-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납품기관(수요기관), 조달청 또는 관련협회	별지 제3호
경영상태	4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해당 신용정보업자	
근로조건 이행계획	5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신청자	별지 제5호
생활임금 지급계획	6	- 신규 채용자 생활임금 지급 확약서	신청자	별지 제6호
신인도	7	- 신인도 평가 관계 증빙자료	관계기관	
결격사유	8	-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재무위험 내용	관계기관	별지 제4호